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이광남[†] · 서병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International Trend of Regulation on IUU Fishing and Countermeasures

*Kwang-Nam LEE · Byung-Kwi SEO**

*Korea Fisheries Association, Fisheries Policy Institution ·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Received April 22, 2003 / Accepted June 24, 2003)

Abstract

It is undeniable that IUU Fishing are threatening so many legal fishermen's economic livelihood, negatively impact on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fishery stock and ecosystem itself. Especially, negative impact of IUU Fishing resulted from the increasing fishery activities on the high seas.

The Korea case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difficulties in conserving and controlling the fishery stock was brought about. Simultaneously, it is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damage such as the reduction of fish Stock management program's effect, dissatisfaction of legal fishermen, over-exploiting of fish stock.

Related with this kind of problem, FAO had adopte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2001)". From this reason, Korea also needs to make actual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i.e. each nation should develop Korea action plan by Feb. 2004 and impliment it, report on implementation toward FAO.

This Paper will review the definition of the IUU stipulated by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study Korea cases of the IUU fishing. Finally, the analysis of Korea's implementation will be

[†] Corresponding author : 011-258-6388, lkn6530@chol.com

done, centering around the contents stated on the International Action Plan.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grope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IUU fishing prevention

Key words :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 서 론

1996년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CCAMLR¹⁾ 수역의 이빨고기(Tooth Fish) 어획량이 13,000톤이었으나 100,000톤 이상이 불법 어획되었다고 보고되어 논의된 것이 국제적으로 IUU어업방지를 위한 노력의 직접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23차 FAO 수산위원회(99.2)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어 FAO 각료회의(99.3)에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FAO 제24차 수산위원회(01.3.2)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²⁾이 채택되었다.

동 국제행동계획은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업선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EEZ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근해어업까지 포괄적으로 국제사회적 차원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규제·근절하기 위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UU어업 방지의 등장은 IUU어업으로 인하여 전지구적으로 자원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불법(illegal) 어업뿐 아니라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보고, 비규제 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타도(combat)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국제행동계획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니나, 하나의 법률적 문건으로서 각 국은 이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IUU 어업과 관련한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한 공해상 및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연안국 EEZ수역

1) 1980년 5월 칠레, 알제틴 등 2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되었으며, 남극해를 관할수역으로 하는 지역수산기구(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임.

2)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제24차 수산위원회(2001. 2 26 - 3. 2)에서는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이 105개국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동 국제행동계획은 총 9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3)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제4조에서는 자발적(voluntary)라고

에서의 불법어업, 연근해 수역에서의 우리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그리고 우리나라 EEZ 수역에서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나 시행상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동 국제행동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IUU어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원양 및 연근해어업에서의 IUU어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동 국제행동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II. IUU어업 개념과 원양·연근해어업의 실태

1. IUU어업의 개념

FAO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IUU 어업이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의 약자이다.

다시 말하면, 「illegal(불법)」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회원국이 협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unreported(비보고)」는 협약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unregulated(비규제)」는 동 국제행동계획의 협약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서와 같다.

2.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일반적으로 IUU어업중에서 원양어업의 경우는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어업 모두가 해당되나,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불법(illegal)어업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를, 연근해어업은 불법어업에 한정하여 IUU어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원양어업

1996년부터 최근 2002년 6월까지의 원양어업관련 IUU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연간 약 1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IUU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총 73건중에서 어업정지가 37건으로 약 50%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차경고 20건, 허가취소 16건 순이었다(표 2 참조).

명시되어 있음. 참고로 수산물관리 국제규범중에서 강제(강행) 규범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1982), 편의국적금지협정(1993),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1995),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협약 및 그 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한·일·중어업협정 등 양자간 협정들이 있으며, 자발적 규범으로는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1995), 연승어업에 의한 바다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상어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어획능력의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등이 있음.

<표 1> 국제행동계획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정의

구 분	위반사항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불법 (Illegal)	연안국 법규 위반	-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1
	국제법관련 규정 위반	-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행하지만 그 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그 국가를 구속하는 보존관리조치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2
	국제적 의무 위반	- 국가 법률을 위반한 어업활동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약속한 의무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2
비보고 (Unreported)	관련국에 비보고/허위보고	-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1
	수산기구에 비보고/허위보고	- 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2
비규제 (Unregulated)	관련국에 비보고/허위보고	-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1
	수산기구에 비보고/허위보고	- 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2

<표 2> 원양어업관련 IUU어업 행정처분 내용

년도	IUU어업의 유형				어업종류별 건수	처분내용(건수)
	소계	불법	비보고	비규제		
1998	14	14	-	-	참치연승: 2, 해외트롤: 2 붕수망: 2, 채낚기: 8	허가취소: 6, 어업정지: 2 1차경고: 6
1999	5	5	-	-	채낚기: 3, 붕수망: 2	허가취소: 2 1차경고: 3
2000	15	15	-	-	북양트롤: 9, 해외트롤: 3 외출낚시: 1, 오징어채낚기: 2	어업정지: 15
2001	30	30	-	-	참치연승: 4, 채낚기: 7 북양트롤: 14, 해외트롤: 5	허가취소: 7, 어업정지: 12 1차경고: 11
2002	9	9	-	-	북양트롤: 2, 채낚기: 2 해외트롤: 3, 외출낚시: 2	허가취소: 1 어업정지: 8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한편,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전반에 대한 IUU어업 사례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러시아수역의 IUU어업 사례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러시아 수역에서의 최근 6년간('96~'01) IUU어업 발생건수는 총 133건(벌금 \$ 4,116,252)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종류로는 허가외 어종 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 문제, 조업수역 위반 등이다(표 3 참조).

<표 3> 러시아 수역에서 IUU어업 실태

(단위 : 건, \$)

구 분		계	허가와 어종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 관련문제	조업수역 위반	기 타*
1996	건 수	45	-	25	8	-	-	12
	벌 금	237,222	-	113,918	59,502	-	-	63,802
1997	건 수	8	4	2	-	-	-	2
	벌 금	27,959	10,845	7,499	-	-	-	9,615
1998	건 수	20	-	2	2	4	-	11
	벌 금	185,434	-	13,222	26,288	35,770	-	110,153
1999	건 수	39	12	7	1	1	3	12
	벌 금	302	48,309	24,136	15,385	15,385	494,522	150,038
2000	건 수	9	2	-	-	-	-	7
	벌 금	2,848,073	6,117	-	-	-	-	2,841,956
2001	건 수	12	-	-	-	2	2	8
	벌 금	69,790	-	-	-	2,292	11,206	56,292

기타* : '96:어체측정 기구불량, 허가장 미변경, 선명 미변경. '97:어창용적도 미비, 조업일지 기재 위반. '98:저층조업, 용적과 선박도면 불일치, 읍서버지시 미이행, 용적차이. '99:Check point 미신고, 용적과 선박도면 불일치, 읍서버 지시 미이행, 용적차이, 해상오물투기, '00 : 허가장 원본 미소지, 허가장 기재사항 미비, 선내폐기물 처리, 체크포인트 통과 문제. '01: Check point 미신고 등

나. 연근해어업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은 단지 원양어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EEZ내에서 이루어지는 IUU어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중에서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의 규범에 저촉되는 불법어업 현황을 살펴보면,4) 최근 6년간 매년 3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해양경찰청에서의 단속실적이 많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의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3,959	3,126	3,443	3,157	3,277	3,161	3,451
해 수 부	95	937	942	725	590	502	417
해 경 청	406	234	234	494	850	1,112	1,152
시·도	3,458	1,955	2,267	1,938	1,837	1,547	1,882

자료 : 해양수산부

4) IUU어업중에서 연근해어업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산업법 및 관련 법규(비보고 규정도 관련 규정에 있음)를 위반하는 불법어업(illegal)만 해당되며, 원양어업의 경우는 불법(연안국 법규 위반), 비보고(쿼타실적 보고 위반), 비규제(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 등이 모두 해당됨.

다음으로 한국 수역을 침범한 외국어선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어선의 우리측 수역의 침범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에는 4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도말 현재 약 4배가 증가한 17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측 수역을 침범 조업한 외국어선 나포상황 (단위 :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중국어선 침범수역	계	45	45	39	39	80	62	174
	영해	45	45	39	31	60	34	34
	EEZ	-	-	-	8	20	28	140
일본어선 침범수역	계	1	-	-	-	4	1	3
	영해	1	-	-	-	-	-	-
	EEZ	-	-	-	-	4	1	3

자료 : 해양수산부

Ⅲ. IUU 국제행동계획과 우리나라의 이행상황 분석

1. IUU국제행동계획의 수립 필요성

IUU 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2004년 2월 이내에 우리나라의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고, 채택 후 4년마다 우리나라의 계획에 대해 이행 및 점검, FAO에 2년단위 보고의 일부분으로서 IUU어업 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사항을 FAO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6> FAO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이행·점검

주 요 내 용	기 간	비 고
국별 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 (동 계획 채택후 3년 이내)	2004년 2월 이내	IUU국제행동계획 2001년 3월 채택(제25조)
국별 계획의 이행/재검토	2005년 2월(1차) (채택후 적어도 4년 마다)	제26조
FAO에 2년단위 보고의 일부분으로서 보고	2년 단위 보고	제87조
FAO수산위원회 분석	2년 마다 평가	제93조

2.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상황 분석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은 서론(I (1.2)), IUU 어업 및 국제행동계획의 성격과 범위(II

(3~7)), 목표 및 원칙(Ⅲ(8~9)), IUU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이행조치(Ⅲ(10~84)),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Ⅲ(85~86)), 보고(Ⅲ(87)), FAO의 역할(Ⅲ(88~93)) 등 모두 7개 부분 9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각국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IUU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이행조치(Ⅲ(10~84))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각 국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① 모든 국가의 책임, ② 기국(旗國)의 책임, ③ 연안국(沿岸國) 조치, ④ 항구국(港口國) 조치 ⑤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 관련 조치(市場國), ⑥ 지역수산물기구 등 6가지이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표 7> 각국/기구가 취해야할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모든 국가의 책임	- IUU어업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가 취해야할 내용
기 국(旗國)	- IUU어업경력 어선에 대한 선적부여 거부
연안국(沿岸國)	- IUU어업경력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거부
항구국(港口國)	- IUU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한 항구국의 승선·검색 권리인정
시장국(市場國)	- IUU어획물 수입금지 등 제재조치 시행
지역수산물기구	- IUU어업혐의가 있는 비회원국 어선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가. 모든 국가의 책임

1) 국제제도 적용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제10조에 1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으로서 그동안 어업관련 국제규범 등에 대해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문서에 비준을 하지 않는 국가도 이들 제도들과 불일치한 방법으로 행동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편의국적금지협정과 유해공해어족보존협정의 수락 및 비준이⁵⁾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12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13개의 주요 국제수산물기구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 기구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FAO 통계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제출 및 지역수산물기구에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별 어획량과 수입량의 차이 문제, 국별 어획량과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간의 종 조성 차이, 부수어획종인 새치류의 소량 어획량 및 분류오류에 의한 차이, 인도양 등록척수와 실제 조업척수 차이에 따른 문제, 생물자료의 부정확 및 부재, 자료제출기한 지연,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제출 실적 저조 등에 대한 문제는 보완이 필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우리나라는 편의국적금지 협정의 경우는 수락하지 않은 상태임(2002.12월 현재, 23개국 수락 하였으며 25개국 수락하면 동 협정이 발효됨),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은 1995년 12월에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준은 하지 않은 상황임.

<표 8> 국제제도 적용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필요여부	
			불필요	필요
제11조	-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 96.1 가입	○	-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가입	- 미가입	-	○
	- 편의국적금지협정 가입	- 미가입	-	○
제12조	-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 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어업통계자료 일부 미비	-	△(보완)

2) 국가의 법규 적용

IPOA 제16조~제24조에서는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법규로 규정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법규 및 국민에 대한 통제(제16조~제19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제20조), IUU어업 제재조치(제21조), 비협력국(제22조), 경제적 유인(보조금 지원 회피)(제23조), MCS 운영 및 기획(제24조제6항), 업계의 이해 및 참여(제24조제7항) 등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국가의 법규 적용관련 이행상황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16조 ~제19조	법규 및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잘 되어 있음	○	-
제20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	- 어선의 등록 및 허가를 득해야만 공해상 출어가 가능	○	-
제21조	제재조치	- 사범처벌, 행정처분병형 등 매우 강력한 제도시행	○	-
제22조	비협력국	- 미가입 지역수산기구라도 협력하고 있음	○	-
제23조	경제적유인 (보조금지원회피)	-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면세유류, 영어자금 해외생산 지원자금 등) 배제 제도 시행중	○	-
제24조제1항	어업허가제도개발	- 불법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
제24조제3항	VMS 이행	- 원양어업 : VMS 58%장착 완료(01기준) - 연근해어업 : VMS 장착 전무	-	○
제24조제4항	오퍼버 프로그램	- 원양어업 : 필요시 운영 중 - 연근해 : TAC제도시행을 위한 초기 단계(9명)	-	○
제24조제6항	MCS 운영 및 기획	- 해수부/국방부/검찰청/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관계부 처간에 공조체제 구축,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 범정부적 차원 적극 추진 중	○	-
	MCS기금 조성	- 어업질서확립자금 운용중 - 일부 운영상 문제점	-	△ (보완)
제24조제7항	MCS 업계이해 및 참여	-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자체 수립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진중	○	-
제24조제9항	MCS D/B체계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불법어업자 대장은 있으나 D/B는 미구축	-	○

그러나 어업허가제도 개발(제24조제1항), VMS이행(제24조제3항), 옵저버프로그램(제24조제4항), MCS기금 조성(제24조제6항), MCS D/B체계 구축(제24조제9항) 등은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9 참조).

나. 국가간 협력

우리나라는 13개국과 양자간 어업협정을 맺고 있으며, 각각의 어업협정서에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있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8조). 또한, 지역수산물기구와의 협력도 동 기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조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향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를 준수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IPOA 제30조의 최초의 공식창구 및 업무 분장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협력 문제는 별도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IUU어업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기국의 책임

가. 어선의 등록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제34조~제36조), 선박등록/허가장 발급 기능 상호보장 문제(제40조)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POA 제37조의 용선어선의 IUU어업 종사 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허가를 해주고 있고, 용선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용선어선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표 10 참조).

<표 10> 어선의 등록 관련 이행상황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34조 ~제36조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함	-	○
제37조 ~제39조	용선어선(또는 FOC)의 IUU어업종사 금지 보 장 등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 하여 원양어업허가 → 용선기간 5년 고려, 2007년 이후 용선 어선이 없어짐	○ (추진중)	
제40조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상호보장	○ 연안 및 구획어업 : 등록·허가 동일 ○ 어업허가 - 근해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 - 원양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 → 등록 및 허가의 통합필요	-	○

나. 어선의 기록

IPOA 제42조에서는 자국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해 어업허가를 받는 어선(허가받지 않은 어선도 포함, IPOA 제43조)에 대하여는 1993 FAO 이행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전 선박의 이름, ② 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③ 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④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⑤ 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에 의한 그 선박에 의한 비이행(non-compliance) 기록, ⑥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박등기부등본이나 어선원부 등에 ①~⑤까지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기록들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⑥어선의 사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어업허가

IPOA 제45조 및 제46조에서의 어업허가장 소지의무 관련, 우리나라는 기존에 어업허가장 소지의무가 있었으나, 동 의무가 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폐지되었다.⁶⁾ 따라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불법어선의 단속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⁷⁾ 이를 다시 부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는 비록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으로 소지의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업국의 입장에서는 연안국의 EEZ입어시, 지역수산물관할 수역 조업시, 향후 공해상 등에서 어업허가장의 소지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큼으로 어업허가장 소지의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업허가장 발급조건 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IPOA 제47조 제8항 및 제10항에 언급되어 있는 FAO 표준 어선표시와 국제적으로 확인된 번호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추진중(2003.3.1시행)이나,⁸⁾ 그 이외의 대부분 조항들은 어업허가장 발급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허가장 발급시 조건들중에서 ① VMS ② 어획보고조건 ③ 전재가 허용된 경우 전재보고 및 다른 조건 ④ 옵서버의 수행사항 ⑤ 조업 및 관련 일지의 유지 중에서 허가장 발급 조건과 별도로 일부 추진중인 것도 있으나, 허가장 발급시 조건에 이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6) 어선의 허가장 소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10호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면허/허가 등에 관한 증서 휴대 의무, 96.12.31 법령공포일)가 1999.04.15 해양수산부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됨.

7) 어업허가장의 확인 없이도 어선등록증, 전화(무선전화), FAX 등으로도 가능함.

8) 원양어선표시크기 및 표시방법등에 관한 고시제정(2002. 11. 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8호.

따라서, 원양어업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TAC제도의 정착,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감척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중장기적으로 어업이 선진화되는 단계에서 도입해야 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IPOA 제48조 및 제49조의 IUU 어선에 제공급/전재 금지를 보장하는 법제도적인 장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어업여건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POA 제50조의 어획/전재 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 규정이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11> 어업허가 관련 이행상황 평가

IPOA	조문내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45조 ~제46조	어업허가장 소지 의무	- 어업허가장 소지의무 폐지됨 - 원양어업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제47조	어업허가장 발급조건	- FAO표준어선 표시 : 509척 360척 부착(약 71% 완료) - 2003.3.1부터 시행(원양어선표지규격 및 부착요령에 대해서는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에 반영)	-	○
제48조 ~제49조	IUU어선 제공급/해상전 재 제한	-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
제50조	어획/전재 정보	- 국내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선 필요	-	○

3. 연안국의 조치

IPOA 제51조에서는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안국이 국내법규 및 국제법과 일치하게 검토하여야 할 조치 중에는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① EEZ내 MCS, ② 타국/지역수산관리기구와 정보 교환 및 협력 ③ 어업허가증 소지 조업 ④ 기록사항 기입한 후 어업허가증 발급 ⑤ 조업일지를 유지 ⑥ 어류제품 전재/가공 연안국의 허가, 적절한 관리규정 적용, ⑦ IUU어업 방지 자국수역의 입어를 규정 ⑧ IUU어업 전력(前歴) 어선의 자국수역입어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EEZ내에서의 MCS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고, 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정보의 교환 및 협력 사안은 한·중, 한·일 어업협정으로 일본, 중국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선박도 연안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증 없이 자국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한국측 EEZ에서의 조업은 사전 입

어선 통보 등을 통하여 해당국에서 통보한 합법적인 어선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어선의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어선이나 중국어선의 경우 한국측 EEZ에서의 조업시 조업일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반대로 한국측 어선이 일본이나 중국측 EEZ에서의 조업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EEZ에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을 전채 및 가공할 경우, 한국측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관리규정과 일치하여 행해짐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측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일본과 중국어선 뿐이고, 한국측 어선도 이들 국가 EEZ에 상호 입어하고 있음으로, EEZ내 전채 및 가공 문제에 대해 한·중·일간 상호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자국수역입어 금지 문제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3국간 상호입어 중임으로 우리측에서 IUU어선 입어금지시, 일본이나 중국측에서도 똑같이 할 경우 어느것이 실익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항구국의 조치

IPOA 제54조~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국의 조치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의 경우 조업국임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항구국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스페인, 호주, EU, 칠레 등의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의 경우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 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 강구중이고, EU는 항구국의 권리 및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개발할 국제회의 개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호주는 Risk-based 어업감시 및 이행 체제를 개발하여 육상과 상공에서의 수색, 어획량 하역 감시, VMS와 같은 기술적 장치와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정책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칠레는 조업한 수산물물의 환적 또는 수산물 수입을 위해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입항통제를 비롯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된 어종만 입항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어선이나 중국어선이 입항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양자간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시 긴급피난 등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안국의 EEZ 및 지역수산물 관리 수역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항구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원양어선들의 조업국 입장에서 외국의 항구국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시장관련 조치

IPOA 제66조~제74조에서는 관련 지역수산물 관리 수역에서 IUU어선 어획물에 대하여

어획부터 판매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입/유통을 금지시키자는 광범위한 조치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동의한 내용은 “국제수산물관리기구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⁹⁾

일반적으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장관련 조치는 다른 조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조치임을 감안 할 때, 기존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인정되고, 관련된 인프라(국내외 포함)가 구축된 이후, 국내제도 도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조치는 원양어선들이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제78조~제84조). 특히,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회원국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난 이후 회원국들에게 요구할 사안들이지, 개별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향후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추가로 합의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IUU어업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제16조~제19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선박(제20조), 제재조치(제21조), 비협력국(제22조), 경제적 유인(제23조), MCS운영 및 기획(제24조제6항), MCS 업계의 이해 및 참여(제24조제6항), 지역수산물관리(제78조~제82조) 등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 국제행동계획의 제11조(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VMS이행(제24조제3항), 옹저버 프로그램(제24조제4항), MCS D/B 구축(제24조제9항),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제34조~제36조),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 기능 상호보장(제40조), 어선의 기록(제42조), 어업허가장 소지의무(제45조~제46조), 어업허가장 발급 조건(제47조), IUU어선 재공급/해상전재 제한(제48조~제49조), 어획전재/정보(제50조), 항구국의 조치(제53조~제63조), 시장관련 조치(제66

9) 예를 들면 CCAMLR에서 2000. 5. 7 채택한 보존조치 “Catch Documentation Scheme(어획증명제도)”에 따르면 이빨고기의 어획과정에서 소비까지 모든 경로마다 일정한 서식(어획증명서)에 기록·확인하여 그 사본을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선적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미첨부시 동 기구 회원국은 이빨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CCSBT에서는 ‘99. 11월 제6차 연례회의에서 “Trade Information System(무역정보제도)”을 채택 2000. 6. 1부터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는 CCSBT 회원국은 CCSBT 사무국에 등록된 통계서류 및 재수출 증명서를 첨부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기로 결의함에 따라 남방참다랑어 어획물의 전량을 CCSBT 회원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통계서류를 미부착한 제품은 수출할 수 없게됨.

조~제74조) 등은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 모든 국가의 책임

가. 국제제도 적용

(1) 유엔공해어족협정(95) 및 FAO 이행협정(93) 가입 장려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가입 추진(IPOA 제12조) 문제는 향후 동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기준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2001년 11월,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동 협정의 기준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중서태평양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MHLC) 등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동 협정 가입에 대한 압력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HLC의 개선추진과 연계 및 일본, 중국 등 여타 조업국은 현재 비준불가 입장임으로 이들 조업국과도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편의국적금지협정 가입 추진(IPOA 제12조)은 우리의 원양어업이 안정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어업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발효요건인 25번째 국가로 비준함으로써¹⁰⁾ 국제어업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국제신인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추진(제12조)은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주요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가입 13, 가입추진 3, 미가입 5 등이며, 우리나라는 직접 FAO에 해구별/어종별/어획량을, 지역수산기구에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자료들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국가의 법규 적용

(2) 감시/통제/검색(MCS)

국가는 어업허가제도를 포함하여 자국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두가지 제도적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어구실명제 도입을 통한 불법어구 제거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행정관청이 명하는 경우에 어구 등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표지에 대하여 손괴·변조 등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구획어업 등 일부업종에 사용되는 망어구

10) 편의국적협정은 23개국이 수락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로 2개국이 수락하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2002.12월 기준). <http://fao.org/legal/treaties/012s-e.htm>.

만 어구표지를 하도록 허가의 제한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불법어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음으로 불법어업 행위의 사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및 별표 9에 있으며, 기초조사 및 표지판 모델·부착방법 등 연구개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등을 통하여 어업법 시험부착 및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 확산으로 불법어업 예방이다. 지역별, 어종별,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유도하여 어장환경 개선, 불법어업 예방, 어획강도 감축, 수산자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수산업법에 자율관리어업 관련 근거규정 마련과 자율관리 공동체를 현행 122개소(2003)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3)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과 관련(제24조제3항, 제47조)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CCAMLR 수역, 참치관련 공해조업선, 러시아 수역 조업선 등에서만 VMS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원양어선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¹¹⁾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근거는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및 제27조제5호 및 국제수산물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제6조 등이다. 따라서, 업계 의견 수렴과 확대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난 이후,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중 어획강도가 높고, 조업구역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연안어업은 근해어업의 부착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표준에 따른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제24조 제4항) 문제는 연안국 및 지역수산물기구에서 국제기준의 읍저버프로그램 개발 등에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불법어업 감시, 자원관리를 위해 TAC 소진상태 및 어획상황의 파악·보고, 수산자원의 평가와 어획특성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과학읍저버 인력확보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읍저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5) IUU어업방지를 위한 기금조성 운영

IUU어업방지를 위한 기금조성 운영은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6항과¹²⁾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어업자들을 합법어업으로 전

11) 국제수산물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2001.12월 기준 507척중 294척만 장착됨.

12) 국가는 MCS 운영계획 수립실시 및 기금조성을 포함하여 자국 어업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업시키고자 1996년부터 자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어업질서확립자금」¹³⁾이다.

동 기금은 1996~199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863척에 대해 280억원의 자금이 배정했으나, 사업시행 주체의 2원화, 지원규모의 미약, 시중자금보다 높은 금리(5%, 1인당 지원액 상향 조정 필요, 사후 관리감독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주체의 일원화, 지원규모 확대, 사후관리 철저 등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6) 불법어업자들에 대한 D/B 구축 등 관리 강화

불법어업자들에 대한 D/B 구축 등 관리 강화(제24조제9항, 제36조, 제42조) 문제는 국내 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문제, 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 책임있는 어업질서 실현, 합법적인 어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자 관리 및 정부의 각종 제재조치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간의 협력

국가간의 협력(제28조, 제50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은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가간에 충분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임으로서 국제적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양자간 협력의 경우 관련 당사국간 상호 협의를 통해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수산기구와 협력은 지역 수산기구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의 규정을 지키면 됨으로 국내제도로의 도입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양국간 상호합의하에 IUU어업방지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근거 및 일부 조문¹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여건을 고려하여 미국과 칠레가 주도하고 있는 MCS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기국의 책임

가. 어선의 등록

(1) IUU 전력(前歷) 어선 자국적 부여 회피

IUU 전력(前歷) 어선 자국적 부여 회피(제36조) 문제는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의 국적 부여 회피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13) 최근에 관련 근거가 이관되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음.

14)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통합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통합(제40조 관련) 문제는 이들 두가지가 통합된다면, 통합된 어선 관련 업무의 추진을 통하여 어선의 관리 강화 및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문제는 여러 가지 추진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어선의 기록

(1) 어선의 기록 유지

어선의 기록유지(제42조 및 제43조) 부문에 있어서는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어선법시행규칙 등에 '선박사진 추가 기록유지' 내용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어업허가장 소지 문제

어업허가장 소지(제45조 및 46조)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10호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면허/허가등에 관한 증서 휴대 의무, 96.12.31법령공포일)가 1999.04.15 해양수산부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근거 및 규정이 폐지되었다.

동 문제는 연근해어선의 경우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업허가장의 확인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어선등록증, 전화(무선전화), FAX 등). 또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규제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업허가장 소지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근해어업의 허가장 소지 의무는 추진상의 한계로 인하여 현행대로 유지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는 비록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으로 소지의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업국의 입장에서는 연안국의 EEZ입어시, 지역수산물기구 관할 수역 조업시, 향후 공해상 등에서 어업허가장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양어선의 경우는 어업허가장 소지를 의무화하여, 타국 및 타 해역에서의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IUU어선 재공급/전재에 대한 제한 문제

IUU어선 재공급/전재에 대한 제한 문제(제48조~제50조)는 IUU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re-supply)/전재 제한을 통하여 원활한 어로작업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으로 동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IUU 어선에 대한 인프라(국내외 포함)가 구축된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연안국 · 항구국 · 시장관련조치

먼저, 연안국의 조치중에서 IUU 어선의 EEZ수역 입어 금지(제51조) 문제는 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우리나라 EEZ수역 입어금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자원관리 및 지속적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을 통하여 우리어선 조업보호 및 합리적인 자원관리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 사안은 양국간(한일, 한중)에 어업협정에 기초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IUU 어업의 근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도입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항구국의 조치(제53조~63조)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구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원양어선들의 조업국 입장에서 주요 연안국들의 항구국조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계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내제도로의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관련 조치 부문(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한 IUU어선 어획물 시장관련 조치, 제66조 및 제69조)은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한 IUU 어선의 어획물 수입 유통 금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를 살펴보면,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제2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제25조(수입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동 문제는 수·출입 관련 국내·외 여건상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먼저, 수입국 및 지역수산물기구의 관련동향 자료 수집 및 이를 업계에 수시로 통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제도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 론

IUU어업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합법적인 어업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IUU 어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적인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초래된 것이며,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이

용 가능한 자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연근해어업의 경우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자원관리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고, 자원조성사업의 효과 반감, 합법적인 어업자들의 불만, 자원고갈의 원인 등 많은 폐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AO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행동계획은 2004년 2월이내에 개발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사항 FAO에 보고 등 동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가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내행동계획(안)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비단 그것이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각을 좀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인 IUU어업 규제에 동참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노력은 첫째,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조업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 국제행동계획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하며 셋째,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 넷째,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추세를 계기로 하여 국내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IPOA의 이행상황 내용중 IUU어업을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이행조치(Ⅲ(제10조~제84조))의 각 조문별로 우리나라 법령에 기 정비된 사항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우리나라가 이행해야할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논문에서는 IUU어업방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어업자원관리와의 관계 등은 검토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는 있다. 따라서, 동 논문을 토대로 향후 IUU어업방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수행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김선표·이형기, 「IUU 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KMI, 2001.
 유동운·이광남외, 「유엔해양법 협약과 어업」,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1997.
 정도훈,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불법어업 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2.
 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EEZ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선박안전조업 입법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2002.
 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구

- 축 및 읍저버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3.
- 해양수산부, 「최근 수산기구동향 및 원양어업환경」, 2001.
- 해양수산부, 수산관계법령집, 2000.
- 한국원양협회, 원양어업통계연보, 각년도.
- <http://fao.org/legal/treaties/012s-e.htm>.
- AJ Press, Australia's approach to developing a 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 Balton, David A., IUU Fishing and State Control over National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 Hon. Dr. A. Lyambo, Combating IUU: the Namibian experi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 Inchiro Nomura, The Need for Concer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